

불임1**공직자등별 외부강의등, 기고 사례금 상한액****□ 외부강의등**

○ 공무원

(단위 : 1시간)

| | | | | |
|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공무원 | 장관급 이상 | 차관급 | 4급 이상* 교육부 연구관 이상 | 5급 이하 교육부 연구사 |
| 상한액 | 50만원 | 40만원 | 30만원 | 20만원 |

○ 교육공무원(권익위 고시 제2016-2호)

- 학생의 정원,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'국립 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'를 기준으로 직급 구분

(단위 : 1시간)

| 구분 | 장관급* | 차관급** | 부교수 이상 | 조교수 이하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대학 | 「공무원보수규정」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| 「공무원보수규정」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| 부교수 이상 | 조교수 이하 |
| 초중등 | | | 교장 | 교감이하 |
| 기타 | | 교육감 | 교육연구관, 장학관 | 교육연구사, 장학사 |
| 상한액 | 50만원 | 40만원 | 30만원 | 20만원 |

* 장관급 총장 : 차관급 총장외 대학교 총장

** 차관급 총장 : 한국복지대, 금오공대, 목포해양대, 한경대, 한국체육대, 한밭대, 한국전통예술문화대, 교육대 총장

○ 사립학교 교원

- 총장,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등 직급에 상관없이 1시간 100만원

○ 공직유관단체 임직원

- 공공기관(서울대, 인천대 등)

(단위 : 1시간)

| 구분 | 기관장 | 임원 | 그 외 직원 |
|-----|------|------|--------|
| 상한액 | 40만원 | 30만원 | 20만원 |

□ 기고 : 1건당 상한액은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과 동일

□ 1시간 초과 시 외부강의등 사례금 :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. 다만,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상한액 제한 없음

※ 강의 시간 산출기준(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) :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,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(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)

불임2**외부강의등 관련 질의·응답 사례**

| 질의(Q) | 응답(A) |
|---|--|
| ▪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? |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나, 징계대상은 해당됨 |
| ▪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? |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,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|
| ▪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는지? |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으나, 행동강령에서는 제한하고 있음(월 3회, 6시간) |
| ▪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에서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식비·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? | 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·숙박비 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도로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됨 |
| ▪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? |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(다만,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),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 |
| ▪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가? |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 |
| ▪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는지? | 사례금 수수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다만,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신고 형식은 출장신청서 또는 근무상황부에 사전 신고사항(외부강의등의 유형, 일시, 강의시간 및 장소, 외부강의등의 주제, 외부강의등의 요청자(기관), 요청사유, 담당자 및 연락처)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신고도 가능함 |
| ▪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요청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는지? |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. 여기서 국가는 국립대학교와 중앙교육연수원 등 소속기관이 해당되며,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가 해당됨 |
| ▪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공공기관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어 신고 제외대상인지? | 한국교육과정평가원, 한국직업능력개발원, 국립법인대학인 서울대학교, 인천대학교 등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임 |
| ▪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발표·토론·심사·평가·의결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인가? | 신고대상의 외부강의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·강연·기고·외에 교육·홍보·발표·토론·심사·평가·의결·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 |
| ▪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가? |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,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|

| 질의(Q) | 응답(A) |
|---|---|
| | 제한은 없음. 다만,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는 있음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외부강의등의 대상 및 내용(주제)은 같지만 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? | 외부강의등의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(주제)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외부강의등에 해당됨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외부강의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? | 외부강의등의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(주제)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모두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? | 외부강의등 사례금에는 강의료, 원고료,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포함됨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지 못한 경우 사후 신고가 가능한지? | <p>외부강의등 신고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나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이때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요청사유란 등에 나타나도록 기재하여야 함</p>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? | <p>사전 신고 후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경우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 반환 여부를 변경신고하여야 함 ※ 신고방법(교육부) : 위키/차세대 e사람/복무/근무상황/외부강의·회의등의 신고 및 변경</p>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 반환에 따른 수수료 등 소요경비의 청구가 가능한지? | 초과사례금을 반환에 따른 소요경비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(부서장 포함)에게 청구할 수 있음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학 교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신고대상 범위는? | <p>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한정하므로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(총장, 학장, 교수, 부교수, 조교수)이 해당됨 ※ (미신고용 대상)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(석좌교수, 객원교수, 대우교수, 명예교수, 겸임교수, 초빙강의교수, 시간강사)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되지 않는 '교원 외'</p>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초·중등 교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신고대상 범위는? | <p>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한정하므로 초·중등의 경우 초·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(교장, 교감, 수석교사 및 교사)과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이 해당됨 ※ (미신고 대상) 초·초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(산학겸임교사, 명예교사, 영어회화 전문강사, 다문화언어 강사, 강사,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) 초·중등교육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'교원 외'</p>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과 별도로 여비수령이 가능한지? |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사례금과 별도로 여비 수령은 가능함 |